

특정 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형건설공사장 기동감찰 -

2019. 5.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백만원, 명)

일련 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ΣΣΣ사업단	♫♫♫♫♫♫♫ 건설사업(♫♫♫♫♫)조성공사 저류조 계획 부적정	시정 기관경고 (별첨)		경고1 중징계3
2	ΣΣΣ사업단	건설공사용 자재(골재)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185 (또는 현물반납)	중징계1
3	ΣΣΣ사업단	♫♫♫건설사업(♫♫♫)조성공사 비점오염저감 시설 설치 부적정	시정		훈계1
4	ΣΣΣ사업단	♫♫♫♫♫♫♫♫ 건설사업(♫♫♫♫♫)조성공사 주요자재 과다계상 등 부적정	시정	감액 4,722	훈계1
5	€€€€처 ♫♫♫♫처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주의		훈계3
6	€€€€처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주의		훈계1 경징계1
7	ΣΣΣ사업단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주의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신분상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 건설사업(🚧🚧🚧) 조성공사 저류조 계획 부적정	ΣΣΣ사업단			경고	
					중징계	
					중징계	
					중징계	
2	건설공사용 자재(골재)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ΣΣΣ사업단			중징계	
					중징계	
3	♫♫♫건설사업(♫♫♫)조성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 부적정	ΣΣΣ사업단			중징계	
					훈계	
4	♣♣♣♣♣♣♣ 건설사업(🚧🚧🚧) 조성공사 주요자재 과다계상 등 부적정	ΣΣΣ사업단			중징계	
					훈계	
5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처			훈계	
					경징계	
		♫♫♫♫처			훈계	
					훈계	
6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처			훈계	
					경징계	
7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ΣΣΣ사업단			-	

3. 처분요구일람표

1) ♪♪♪♪♪♪♪ 건설사업(🔧🔧🔧)조성공사 저류조 계획 부적정	(시정) 4
1-1) ♪♪♪♪♪♪♪ 건설사업(🔧🔧🔧)조성공사 저류조 계획 부적정 등	(징계) 11
2) 건설공사용 자재(골재)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시정) 20
2-1) 건설공사용 자재(골재)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등	(징계) 23
3) 🎵🎵🎵건설사업(♩♩♩)조성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부적정	(시정) 26
4) ♪♪♪♪♪♪♪ 건설사업(🔧🔧🔧)조성공사 주요자재 과다계상 등 부적정	(시정) 30
5)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주의) 37
6)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주의) 41
6-1)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등	(징계) 44
7)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주의) 49

후 방류하여 하류의 홍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기관은 2013. 10. ♣♣♣♣♣♣♣ 건설사업(₩ ₩ ₩)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서에 사업구역 내 6개 지점에 영구저류지와 소요용량을 아래
 [표1]과 같이 산정하였고 SP3~GBI 영구저류지는 1단계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감사일 현재 기설치 완료 되었으며, ♣♣♣♣♣♣♣ 🏠🏠🏠 사업구역인
 GBT3, GBM지점은 저류지 설치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아래표와 같이 사업계획
 에 반영하였다.

[표1] 영구저류지 소요용량

구 분	SP3	GBD	GBH	GBI	GBT3	GBM	비 고
수심(m)	2.36	2.18	2.19	2.22	2.3	1.92	
면적(m ²)	5,516	2,374	1,502	3,467	8,849	1,420	
용량(m ³)	11,430	4,304	2,603	6,594	18,424	2,208	
개발후홍수량(m ³ /s)	25.47	9.44	8.74	13.73	26.43	10.00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사전재해영향 검토보고서(2013.10.) 재편집

☞☞☞☞☞☞☞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7년 5월 작성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역변경 등으로 2단계 사업구역 내 GBT3지점과 GBM지점의 홍수 유출량은 아래 [표2]와 같이 저감되도록 산정되어 홍수 유출량만으로 판단시에는 1단계 사업추진 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저류지로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표2] 개발 전·후 홍수유출량 분석결과

산정지점	50년빈도 홍수유출량(m³/s)			비 고
	개발 전	개발 후	증감	
계	32.86	30.60	⊖ 2.26	도양리 배수구역
GBT3	22.30	25.71	⊕ 3.41	2단계 저류지
GBM	10.56	4.89	⊖ 5.67	저감대책 불필요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 재편집

또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에 따르면 공사 ∫ ∫ 지
사가 관리하는 도양리 배수구역에는 사업 개발 후 홍수

량이 개발 전 홍수량보다 저감되어 빗물펌프장을 추가 설치할 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 2단계 저류지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 ㄱ ㄱ 지사와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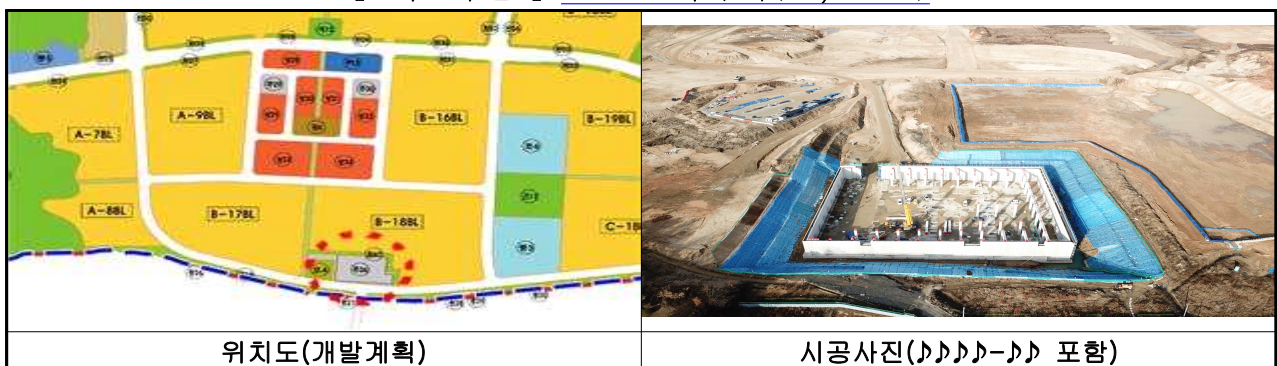
①공동주택 분양면적이 91,119㎡ 감소하여 55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분양면적 감소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임의 작성되었으며,

②수로폭 확대(GBT3지점 8.5m, GBM지점 5.5m)를 위한 토지 보상비와 빗물펌프장 추가 설치 등에 5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 전 작성된 1단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보고서(2013.10.)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배수구역내 부지(구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개발 후 홍수량이 저감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부풀려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사 ㄱ ㄱ 지사와 기관 협의는 342억원(관급 포함)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저류조 설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합리적 판단근거를 가지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가 관련기관 방문 후 ㉸㉸㉸㉸㉸공사 ㄱ ㄱ 지사가 배수로 확장이 불가할 것으로 단순 판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기관은 아래 [그림·사진1]의 GBT3지점에 14억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설치 가능한 저류지 시공 기회를 상실하고 기계·전기설비 등 설치 및 운영에 따라 장래 유지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저류조(빗물펌프장)로 변경되게 함으로써 사업비 200억원(관급제외) 소요되게 하였다.

[그림·사진1] GBT3 저류지(58,500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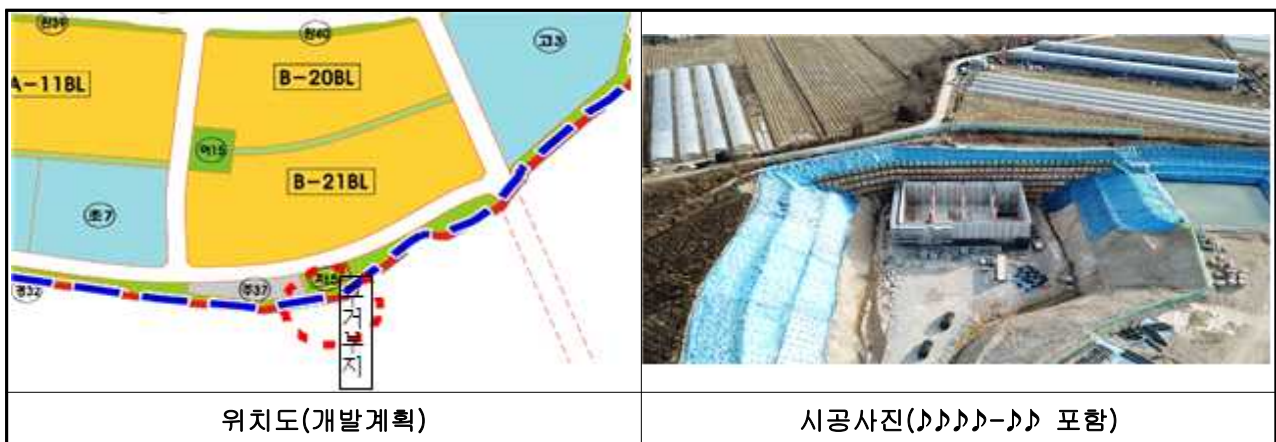


또한, GBM지점의 경우 위 기관이 2017년 5월 작성한 사전재해영향검토서에 따르면 50년 빈도 홍수 유출량이 개발 전 $10.56\text{m}^3/\text{s}$ 보다 신도시 조성 후 $4.89\text{m}^3/\text{s}$ 로 저감되어 별도의 저감대책 불필요한 것으로 작성 되었고,

사업지구 밖 배수구역에는 평균폭 $B=10\text{m}$ 의 구거부지가 있어 일부구간 배수로 정비 후 자연 유하로 배수가 가능하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결과 GBM지점으로 집수되는 (특)1-161과 소(특)1-162 도로에서 유출되는 우수를 중(집)2-33도로 구역을 거쳐 GBT3 지역으로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아래 [그림·사진2]와 같이 불필요한 4,800톤 규모 ($20\text{m} \times 30\text{m} \times 8\text{m}$)의 방재신기술이 적용된 저류조(펌프장)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착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 82억원(관급제외)을 소요되게 하였다.

[그림·사진2] GBM 저류지(4,800톤)



2. 영구저류조 배수 계획 부적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의 우수 배수방식별 특성 비교에 따르면 자연배수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가장 양호하며, 기계배수(펌핑)는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은 반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자연배수에 비해 과다하며, 자연배수+기계배수의 경우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지형상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GBT3지점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하류부 배수관 통수능력($4.5\text{m}^3/\text{s}$)을 초과하는 유량만 저류조로 유입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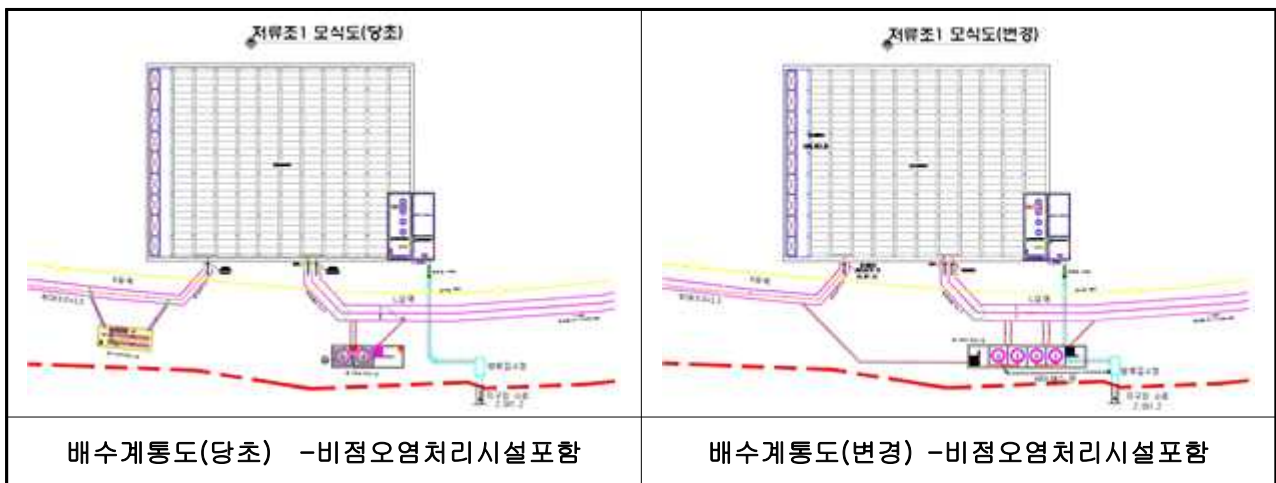
기계배수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절감 된다.

이에, 감사기간 중 아래 [그림·사진3]과 같이 우수배제 개선(안)으로 변경 시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를 1개로 통합 시공이 가능하고, 사업구역 밖 배수로의 통수능력($4.5\text{m}^3/\text{s}$) 범위 내 호우와 50년 빈도의 홍수 시 최대 $22,950\text{m}^3$ (140분 기준)을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면밀한 검토없이 아래 [그림·사진3] 좌측 그림과 같이 우수유량을 저류조로 전량 유입시켜 기계배수(펌핑)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펌프용량을 $270\text{m}^3/\text{분}$ 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50백만원/년 정도)와 관리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저류조에 서로 다른 2가지 형식의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래 유지관리 및 00시와 시설물 인수·인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림·사진3] GBT3 저류지 배수 계통



3. 저류조 특허 공법 반영 부적정

위 기관은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신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자재 선정(안)을 2017. 6. 20. 작성하였으며, 2017. 6. 29. 『자재 및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위원장 b b b)』를 개최하여 7개분야 26개 항목의 자재 및 공법을 의결하였다.

그리고, 주요자재 선정(안)을 작성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로부터 저류조

시공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신기술에 대한 검증없이 ♪♪♪♪-♪
♪2)공법(방재신기술)이 현장타설 공법으로 시공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 공법은 실시설계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자재 및 신기술적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당시 작성한 신기술 총사업비 보다 45억원(관급포함)
추가 소요 되었고 감사기간 중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
우 오히려 41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런데도, 위 기관에서는 주요자재선정(안)을 작성하면서 경제성 점수를 위
신기술에 23점(현장타설 19점)을 부여하고 총점 91점으로 채점하여 심의위원에
게 배부하였으며, 2017. 6. 29. 자재 및 신기술적용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기술/신
공법은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의결된다고 설명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 저
류조 구조체에 반영된 ♪♪♪♪-♪♪공법을 경제성, 시공성 등을 평가하여
91.83점으로 적정한 공법으로 의결하였다.

그 결과, 위 신기술 보유 업체인 경기도 ○○시 ○○구 소재 >>>>>
>>>(주) ♡♡♡은 ♡♡♡♡♡♡ 건설공사(🏗️)조성공사 중 저류조 1,2
구조물 공사(RC+PC) 일체를 9,133백만원에 하도급(비율 82%) 계약·시공 하
게 되었다.

[표3] 저류조 공법 비교표

	사업비 비교(억원)					비 고
	심의안(A)		설계금액(B)		차 액 (B-A)	
	단가	총액	단가	총액		
♪ ♪ ♪ ♪ - ♪ ♪	20만원/톤	116	28만원/톤	161	⊕ 45	
현장타설	21만원/톤	122	21만원/톤	120	⊖ 2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자료 재편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지침에도 ♪ ♪ ♪ ♪-♪ ♪ 공

2) 샌드위치 Half PC Wall구조의 벽체와 MTS 바닥판을 이용한 빗물저류조 PC복합화기술로 현장 타설공법의 구조일체성과 PC공법의 시공성 및 노동절감 등의 장점을 활용한 빗물저류조 기술

※ 기술보유자 : ♂♂♂♂♂(주) ■■■■, (주)✓✓ ■■■■

법 단가를 29만원/톤으로 명기되어 있음

4.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전 사업 착공 부적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사업시행자는 자금계획서 등이 포함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 건설사업 추진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착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2017. 9. 26.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및 2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기관협의 등을 거쳐 경북도(ΣΣΣΣ과)로부터 2018. 3. 8.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그 이전 2017. 12. 29. 사업을 착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앞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시고,
- ② 우수는 자연유하 방식으로 우선 배수하고 초과 유량에 대해서 저류조에 저류 후 방류되도록 배수계획을 조정하시기 바라며,
- ③ 사업계획 및 신기술공법 선정시 객관적 검증 자료를 근거로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④ 또한, 관련자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 건설사업(☞☞☞)조성공사 저류조 계획 부적정 등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관 련 자 ① ΣΣΣ사업단
○○○ ㄱ ㄱ ㄱ(주민등록번호 b b b b b b - b *****)
(현 ○○○) ②③④과 병합

② ΣΣΣ사업단
○○○ ㄴ ㄴ ㄴ(주민등록번호 b b b b b b - b *****)

징 계 종 류 중징계

내 용

위 사람 ①ㄱㄱㄱ은 2011. 12. 1.부터 2017. 3. 5.까지 ΣΣΣ사업단 조성
팀장, 2017. 3. 6부터 2019. 1. 31.까지 계획팀장으로,

위 사람 ②ㄴㄴㄴ은 2017. 3. 6.부터 2018. 7. 31.까지 같은 사업단에서 실
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 건설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위
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① ㄱㄱㄱ의 경우

1. 영구저류조 계획 및 기관협의 소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따르면 저류형 저감시설은 지구에서 유출되는 우수
를 일정시설을 통하여 조절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홍수가 지나간 후 방류
하는 시설이며,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해당 배수구역내에서 개발 등으로

증가되는 초과유출량을 저류 또는 침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도심지의 전용 저류시설은 대부분 지하저류조 형태로 설치되어 평시에는 빈공간으로 유지되며,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초과유량을 저류 후 방류하여 하류의 홍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7년 5월 작성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역변경 등으로 2단계 사업구역 내 GBT3지점과 GBM지점의 홍수 유출량은 아래 [표2]와 같이 저감되도록 산정되어 홍수 유출량만으로 판단시에는 1단계 사업추진 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저류지로 시공하는 것이 적정하였다.

[표2] 개발 전·후 홍수유출량 분석결과

산정지점	50년빈도 홍수유출량(m³/s)			비 고
	개발 전	개발 후	증감	
계	32.86	30.60	⊖ 2.26	도양리 배수구역
GBT3	22.30	25.71	⊕ 3.41	2단계 저류지
GBM	10.56	4.89	⊖ 5.67	저감대책 불필요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 재편집

또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에 따르면 ☞☞☞☞☞☞☞공사 ∫ ∫ 지사가 관리하는 도양리 배수구역에는 ☞☞☞☞☞☞☞☞☞사업 개발 후 홍수량이 개발 전 홍수량보다 저감되어 빗물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이 실무책임자로서 2단계 저류지 설치와 관련하여 ☞☞☞☞☞☞☞☞☞공사 ∫ ∫ 지사와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가. 공동주택 분양면적이 91,119㎡ 감소하여 55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분양면적 감소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임의 작성되었으며,

나. 수로폭 확대(GBT3지점 8.5m, GBM지점 5.5m)를 위한 토지 보상비와 빗물펌프장 추가 설치 등에 5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 전 작성된 1단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보고서(2013. 10.)에 근거하여 작

성되었으며, 배수구역내 부지(구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개발 후 홍수량이 저감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사 ∫ ∫ 지사와 기관 협의는 342억원(관급 포함)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저류조 설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합리적 판단근거를 가지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부서에서 관련기관 방문 후 〚〚〚〚〚공사 ∫ ∫ 지사가 배수로 확장이 불가할 것으로 단순 판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GBT3지점에 14억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설치 가능한 저류지 시공 기회를 상실하고 기계·전기설비 등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장래 유지관리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저류조(빗물펌프장)로 변경되게 함으로써 사업비 200억원(관급제외) 소요되게 하였다.

GBM지점은 사전재해영향검토서(2017. 5.)에 따르면 50년 빈도 홍수 유출량이 개발 전 $10.56\text{m}^3/\text{s}$ 보다 신도시 조성 후 $4.89\text{m}^3/\text{s}$ 로 저감되어 별도의 저감대책 불필요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사업지구 밖 배수구역에는 평균폭 $B=10\text{m}$ 의 구거부지가 있어 일부구간 배수로 정비 후 자연 유하로 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불필요한 4,800톤 규모($20\text{m}\times 30\text{m}\times 8\text{m}$)의 저류조(펌프장)를 사업계획에 반영되게 하고 우선 착공하게 함으로서 사업비 82억원(관급제외)을 소요되게 하였다.

2. 영구저류조 배수 계획 부적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의 우수 배수방식별 특성 비교에 따르면 자연배수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가장 양호하며, 기계배수(펌핑)는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은 반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자연배수에 비해 과다하며, 자연배수+기계배수의 경우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고 유

지관리비가 저렴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지형상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GBT3지점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하류부 배수관 통수능력($4.5\text{m}^3/\text{s}$)을 초과하는 유량만 저류조로 유입하여 기계배수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유리할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절감 된다.

이에, 감사기간 중 아래 [그림·사진3]과 같이 우수배제 개선(안)으로 변경 시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를 1개로 통합 시공이 가능하고, 사업구역 밖 배수로의 통수능력($4.5\text{m}^3/\text{s}$) 범위 내 호우와 50년 빈도의 홍수 시 최대 $22,950\text{m}^3$ (140분 기준)을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면밀한 검토 없이 우수유량을 저류조로 전량 유입시켜 기계배수(펌핑)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펌프용량을 $270\text{m}^3/\text{분}$ 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50백만원/년 정도)와 관리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저류조에 서로 다른 2가지 형식의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래 유지관리 및 00시와 시설물 인수·인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저류조 특허 공법 반영 부적정

위 기관은 〇〇〇〇〇〇〇〇〇 건설사업(〇〇〇)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신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자재 선정(안)을 2017.6.20. 작성하였으며, 2017.6.29. 『자재 및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위원장 b b b)』를 개최하여 7개분야 26개 항목의 자재 및 공법을 의결한바 있다.

위 사람은 실무책임자로서 주요자재 선정(안)을 작성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로부터 저류조 시공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신기술에 대한 현장검증 절차 없이 현장타설공법보다 〇〇〇〇-〇〇〇〇공법(방재신기술)이 경제적이라는 자료를 면밀한 검토없이 2017. 6. 7. 조성과트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법은 실시설계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자재 및 신기술적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당시 작성한 신기술 총사업비 보다 45억원(관급포함) 추가 소요 되었고 감사기간 중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장타설로 시공할 경우 오히려 41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3] 저류조 공법 비교표

	사업비 비교(억원)					비 고
	심의안(A)		설계금액(B)		차 액 (B-A)	
	단가	총액	단가	총액		
♪ ♪ ♪ ♪ - ♪ ♪	20만원/톤	116	28만원/톤	161	⊕ 45	
현장타설	21만원/톤	122	21만원/톤	120	⊖ 2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자료 재편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지침에도 ♪♪♪♪-♪♪공법 단가를 29만원/톤으로 명기되어 있음

4. 건설공사용 자재(골재) 수요판단 착오

위 사람은 2016.9.29. ♡♡♡♡♡♡♡ 건설사업(♫♫♫)조성공사 조성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단계에 소요되는 골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데도 2단계에 사용시 경제적이다는 사유로 암버럭 25,000m³를 설계변경으로 반영되게 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신도시 조성 2단계사업에 사용될 골재보다 초과 반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건설사업(♫♫♫)조성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부적정

위 사람은 ♪♪♪건설사업(♫♫♫)조성공사의 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12. 30. 사업 준공 시 호민지 수위는 만수위로 저감시설은 기능이 상실된 침수 상태임에도 적정조치를 명하지 않고 시설물을 인수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기능상실이 되게 한 사실이 있다.

6. ♡♡♡♡♡♡♡ 건설사업(☞☞☞)조성공사 주요자재 과다계상

또한, 위 사람은 ♡♡♡♡♡♡♡ 건설사업(☞☞☞) 조성공사의 계획담당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공법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면밀한 검토없이 산석옹벽 등 고가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정을 반영하여 감사일 현재 아래표 내역서 확인내용과 사업비를 과다계상되게 한 사실있다.

[표2] 내역서 확인내용 “생략”

② $\nabla \nabla \nabla$ 의 경우

1. 영구저류조 계획 및 기관협의 소홀

♣♣♣♣♣♣♣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17년 5월 작성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유역변경 등으로 2단계 사업구역 내 GBT3지점과 GBM지점의 홍수 유출량은 아래 [표2]와 같이 저감되도록 산정되어 홍수 유출량만으로 판단시에는 1단계 사업추진 시 개발계획에 반영한 저류지로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표2] 개발 전·후 홍수유출량 분석결과

산정지점	50년빈도 홍수유출량(m³/s)			비 고
	개발 전	개발 후	증감	
계	32.86	30.60	⊖ 2.26	도양리 배수구역
GBT3	22.30	25.71	⊕ 3.41	2단계 저류지
GBM	10.56	4.89	⊖ 5.67	저감대책 불필요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 재편집

또한, 사전재해영향검토보고서(2017.5.)에 따르면 공사 $\int \int$ 지사가 관리하는 도양리 배수구역에는 사업 개발 후 홍수량이 개발 전 홍수량보다 저감되어 빗물펌프장을 추가 설치할 사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이 실무담당자로서 2단계 저류지 설치와 관련하여 ㉮㉮ ㉮㉮공사 ∫ ∫ 지사와 협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

가. 공동주택 분양면적이 91,119㎡ 감소하여 550억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분양면적 감소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임의 작성되었으며,

나. 수로폭 확대(GBT3지점 8.5m, GBM지점 5.5m)를 위한 토지 보상비와

빗물펌프장 추가 설치 등에 5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된 부분은 개발계획 변경 전 작성된 1단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보고서(2013. 10.)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배수구역내 부지(구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개발 후 홍수량이 저감된 점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사 ∫ ∫ 지사와 기관 협의는 342억원(관급 포함) 이상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저류조 설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합리적 판단근거를 가지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부서에서 관련기관 방문 후 〚〚〚〚〚공사 ∫ ∫ 지사가 배수로 확장이 불가할 것으로 단순 판단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GBT3지점에 14억원 정도의 적은 금액으로 설치 가능한 저류지의 시공 기회를 상실하고 기계·전기설비 등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장래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는 저류조(빗물펌프장)로 변경되게 함으로써 사업비 200억원(관급제외) 소요되게 하였다.

GBM지점은 사전재해영향검토서(2017. 5.)에 따르면 50년 빈도 홍수 유출량이 개발 전 $10.56\text{m}^3/\text{s}$ 보다 신도시 조성 후 $4.89\text{m}^3/\text{s}$ 로 저감되어 별도의 저감대책 불필요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고,

사업지구 밖 배수구역에는 평균폭 $B=10\text{m}$ 의 구거부지가 있어 일부구간 배수로 정비 후 자연 유하로 배수가 가능하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불필요한 4,800톤 규모($20\text{m}\times 30\text{m}\times 8\text{m}$)의 저류조(펌프장)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비 82억원(관급제외)을 소요되게 하였다.

2. 영구저류조 배수 계획 부적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의 우수 배수방식별 특성 비교에 따르면 자연배수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가장 양호하며, 기계배수(펌핑)는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은 반면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자연배

수에 비해 과다하며, 자연배수+기계배수의 경우 배수관리에 안정성이 높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지형상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GBT3지점은 자연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하류부 배수관 통수능력($4.5\text{m}^3/\text{s}$)을 초과하는 유량만 저류조로 유입하여 기계배수하는 것이 시설물 관리에 유리하고 유지관리비도 절감 된다.

이에, 감사기간 중 아래 [그림·사진3]과 같이 우수배제 개선(안)으로 변경 시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를 1개로 통합 시공이 가능하고, 사업구역 밖 배수로의 통수능력($4.5\text{m}^3/\text{s}$) 범위 내 호우와 50년 빈도의 홍수 시 최대 $22,950\text{m}^3$ (140분 기준)을 자연유하로 배수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면밀한 검토 없이 우수유량을 저류조로 전량 유입시켜 기계배수(펌핑)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펌프용량을 $270\text{m}^3/\text{분}$ 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50백만원/년 정도)와 관리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저류조에 서로 다른 2가지 형식의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래 유지관리 및 00시와 시설물 인수·인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 저류조 특허 공법 반영 부적정

위 기관은 0000000000 건설사업(0000)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신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자재 선정(안)을 2017.6.20. 작성하였으며, 2017.6.29. 『자재 및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위원장 000)』를 개최하여 7개분야 26개 항목의 자재 및 공법을 의결한바 있다.

위 사람은 실무책임자로서 주요자재 선정(안)을 작성하면서 신기술 보유업체로부터 저류조 시공비용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신기술에 대한 현장검증 절차 없이 현장타설공법보다 0000-0000공법(방재신기술)이 경제적이다는 자료를 면밀한 검토없이 2017. 6. 7. 조성파트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공법은 실시설계 결과 아래 [표3]과 같이 자재 및 신기술적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당시 작성한 신기술 총사업비 보다 45억원(관급포함) 추가 소요 되었고 감사기간 중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장타설로 시공시 오히려 41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3] 저류조 공법 비교표

	사업비 비교(억원)					비 고
	심의안(A)		설계금액(B)		차 액 (B-A)	
	단가	총액	단가	총액		
♪ ♪ ♪ ♪ - ♪ ♪	20만원/톤	116	28만원/톤	161	⊕ 45	
현장타설	21만원/톤	122	21만원/톤	120	⊖ 2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자료 재편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지침에도 ♪♪♪♪-♪♪공법 단가를 29만원/톤으로 명기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ㅋㅋㅋ, ㄴㄴㄴ을 “중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회수	재정상 조치금액	185천원 (물품반납)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 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용 자재(골재) 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내 용

1. 자재(골재) 수요판단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 조성공사(2공구)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15.12.23. 경북도에 설계변경 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북도에서는 2단계에 소요되는 골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별도 발주대상이라는 심사결과를 2015.12.29.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2014.12.12. >>>>공사 &&&&건설사업단장과 골재 반출·반입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5.9.~2016.2. 기간 중 상주~안동 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암버럭 110,000m³(자연상태)를 2,103백만원을 들여 반입하였으며,

2016.9.29. 0 0 시와 골재 반출·반입 협약서를 체결하고 &&&&~### #터미널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럭 25,000m³(자연상태)을 운반비 519백만원 상당을 들여 반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단계에 소요되는 골재 135,000m³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 2,622백만원 증액하였다.

또한, 위 기관은 &&& 건설사업(\$ \$ \$)을 추진하면서 보조기충용 골재를 과잉 반입으로 인해 18,694m³의 잔여골재가 발생되게 하였으며, 그 이후 1

단계 시설보완공사에 11,494m³를 사용하고 잔여골재 7,200m³를 감사일 현재 2단계 사업구역내 적치하고 있으며,

사업구역 인접 ㅉㅉㅉ 생태하천 자연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ㅉㅉ군에 원석대(1,540원/m³)를 지불하고 2016.7.11.으로부터 하천골재(막자갈) 20,000m³를 반입 하였으나 8,148m³만 사용하고 잔여 골재 11,852m³를 2단계 사업구역내 적치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사에 필요한 골재 수요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자재를 반입하여 감사일 현재 2단계 사업에 필요한 골재량 118,839m³³)(자연상태) 보다 33,770m³가 추가 반입 되었으며,

그 결과 감사일 현재 사업비 656백만원 정도(암버럭 반입단가 기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2. 물품관리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기관은 『경북북부권 ▽▽▽▽▽▽▽▽조성 건설공사』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기초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추가 반입된 골재(암버럭) 일시사용 요청에 따라 2017.1.18.~2017.3.9. 기간중 5일 동안 690대 분량의 골재 9,500m³(시가 185백만원 정도)를 반출할 수 있도록 비공식 승인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현물 또는 실비로 돌려 받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소요 골재량(118,839m³)=보조기층재 외(113,094m³)+PC박스 치환재(5,745m³) - 자연상태

[사진] 골재 야적장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협의 없이 반출된 건설공사용 자재는 물품관리규정 등 경상북도개발공사 사규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회수(현물 또는 현금)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과다 반입된 건설공사용 골재는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건설공사용 자재(골재) 수요판단 및 물품관리 부적정 등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① ΣΣΣ사업단
관 련 자 ○○○ √√√(주민등록번호 b b b b b b - b *****)
①과 병합
징 계 종 류 중징계
내 용

위 사람 √√√은 2014. 1. 1.부터 2017. 3. 5.까지 ΣΣΣ사업단 조성파트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2017. 3. 6.부터 2019. 1. 31.까지 같은 부서에서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1. 자재(골재) 수요판단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이전 ㄹㄹㄹ 건설사업(\$ \$ \$) 조성공사(2공구)를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15.12.23. 경북도에 설계변경 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북도에서는 2단계에 소요되는 골재는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별도 발주대상이라는 심사결과를 2015.12.29.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4.12.12. >>>>공사 ㄹㄹㄹㄹㄹ 건설사업단장과 골재 반출·반입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5.9.~2016.2. 기간 중 상주~안동 간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암버럭 110,000m³(자연상태)를 2,103백만원을 들여 반입하였으며,

2016.9.29. ㄹ ㄹ 시와 골재 반출·반입 협약서를 체결하고 ㄹㄹㄹㄹ~ ##

터미널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암버럭 25,000m³(자연상태)을 운반비(519백만원 상당)를 들여 반입하는 등 2차레에 걸쳐 2단계에 소요되는 골재 135,000m³를 설계변경으로 반영하고 계약금액 2,622백만원 증액하였다.

또한, 〰〰〰 건설사업(〰 〰 〰)에서 보조기충용 골재를 과잉 반입하여 18,694m³의 잔여골재가 발생되게 하였으며, 그 이후 1단계 시설보완공사에 11,494m³를 사용하고 잔여골재 7,200m³를 감사일 현재 2단계 사업구역 내 적치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에 필요한 골재 수요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자재를 반입하여 감사일 현재 2단계 사업에 필요한 골재량보다 추가 반입되게 하였다.

2. 물품관리 부적정

경상북도개발공사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경북북부권 ▽▽▽▽▽▽▽▽조성 건설공사』 시공사인 ∞∞건설로부터 기초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추가 반입된 골재(암버럭) 일시사용 요청에 따라 b b b 단장에게 보고하고 비공식 승인하였다.

그 결과, ∞∞건설(현장소장 ▽▽▽)이 2017.1.18.~2017.3.9. 기간중 5일 동안 690대 분량의 골재 9,500m³(시가 185백만원 정도)를 반출 하였으며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물 또는 시가로 돌려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저류조 특허 공법 검토서 작성 부적정

위 기관은 〰〰〰〰〰〰〰〰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재 및 신기술을 결정하기 위해 주요자재 선정(안)을 2017.6.20. 작성하였으며, 2017.6.29. 『자재 및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위원장 b b b)』를 개최하여 7개분야 26개 항목의

자재 및 공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위 사람은 계획파트에서 2017. 6. 7. 주요자재 선정(안)을 제출받고 신기술 보유업체로부터 견적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시공된 현장을 검증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공법(방재신기술)이 경제성이 있으며 관련기준에 부합된다는 검토서를 작성하여 2017. 6. 29. 심사위원회에 배부하였다.

그러나, 위 공법은 실시설계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자재 및 신기술적용심사위원회 결정 당시 작성한 신기술 총사업비 보다 45억원(관급포함) 추가 소요 되었고 감사기간 중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현장타설로 시공시 오히려 41억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3] 저류조 공법 비교표

	사업비 비교(억원)					비 고
	심의안(A)		설계금액(B)		차 액 (B-A)	
	단가	총액	단가	총액		
♪ ♪ ♪ ♪ - ♪ ♪	20만원/톤	116	28만원/톤	161	⊕ 45	
현장타설	21만원/톤	122	21만원/톤	120	⊖ 2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공 자료 재편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연재난복구지침에도 ♪♪♪♪-♪♪공법 단가를 29만원/톤으로 명기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을 “중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 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 ♫)조성공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경북도청이전♪♪♪ 건설사업(♫ ♫ ♫) 조성공사”를 다음 [표]와 같이 추진하였다.

[표] 사업현황 “생략”

비점오염저감시설⁴⁾(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 설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으로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위 공사 지방서 0. 총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에 것) 제76조 관련 [별표 17]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2014. 4. 환경부)에 따르면 저감시설로 여과형 시설⁵⁾을 설

4)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하고, 저감시설로는 저류시설, 식생형 시설,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등이 있다.

5) 여과형 시설 : 강우유출수를 집수조 등에서 모은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한다.

치하는 경우 설치위치는 시설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을 배치하여야 하고 댐의 상류에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댐 수몰지에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댐 수몰선 아래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댐의 만수위보다는 높은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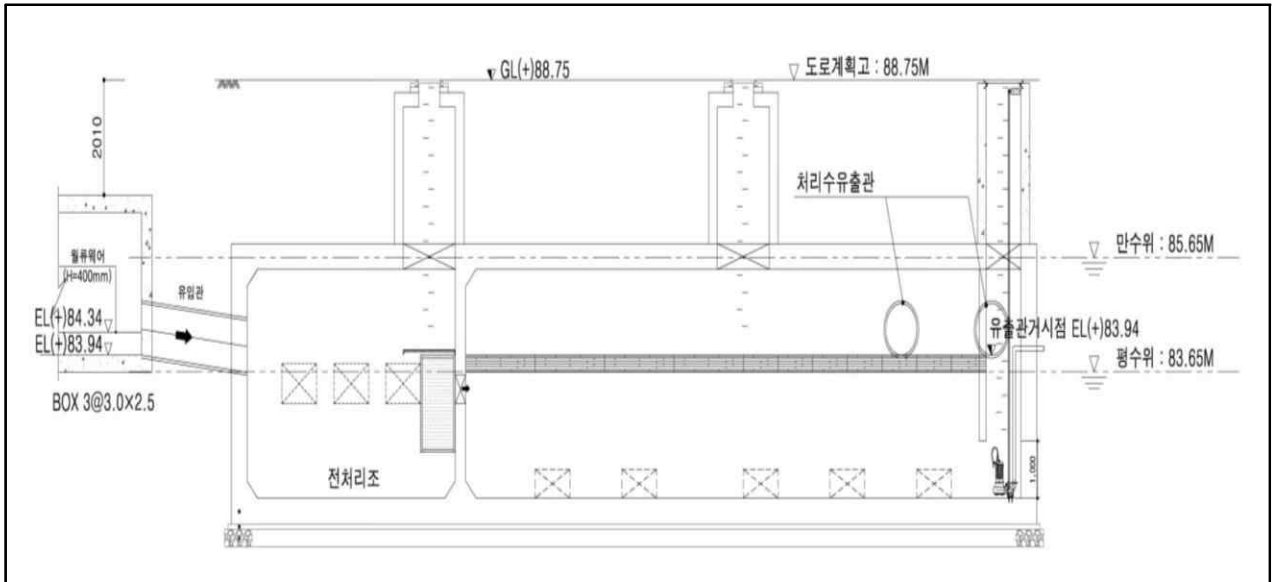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하는 저감시설은 시설의 기능 상실 방지를 위해 댐 수몰지에 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댐 수몰선 아래에 설치하더라도 댐의 만수위보다는 높은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서는 E-1구역, E-2구역, G구역, N구역 저감시설 4개소 설치를 별첨 [그림]과 같이 실시설계에 반영하면서 저수지(호민지) 만수위(EL(+))85.65m)보다 높게 설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했으나 [그림1], [그림2]와 같이 만수위⁶⁾보다 낮게 설치되도록 반영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 및 설계 변경 없이 그대로 시공 후 2015. 12. 30. 준공⁷⁾하였다.

6) 저감시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설치높이(평균 EL(+))84.28m)를 만족하는 호민지 저수율은 별첨 [표1]에 따라 55.27%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호민지 저수율이 55.27%보다 높은 기간은 별첨 [표2]에 보면 년 평균 335일정도로 해당기간동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능이 상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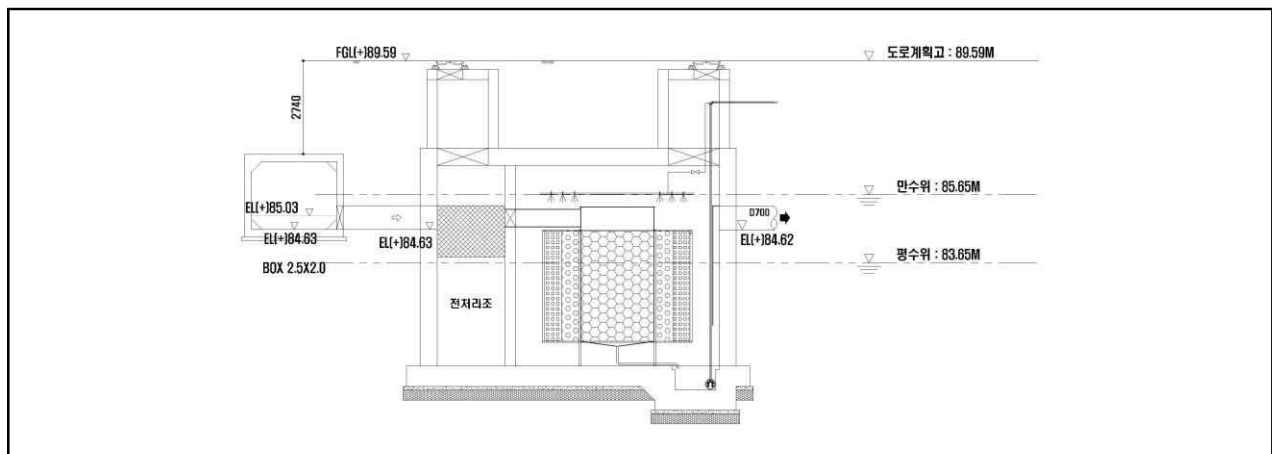
7) 2015. 12. 30. 사업 준공 시 호민지 수위는 만수위(EL(+))85.65m)로 저감시설은 기능이 상실된 침수 상태임에도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준공처리 했으며, 2016. 3. 11. 00시로 이관 시에도 호민지 수위는 만수위로 기능 상실된 상태로 시설물 관리이관 함.

[그림1] E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단면도



주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림2] E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단면도



주 : 경상북도개발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1,52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저감시설 4개소가 제기능⁸⁾을 발휘하지 못해 신도시 내에 발생하는 비점오염원⁹⁾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8) 감사기간 중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E-1유역, E-2유역, G유역, N유역 적정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하여 약 2,127백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9) 비점오염원 :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씻겨지면서 배출되어 정확히 어디가 배출원인지 알기 어려운 산재된 오염원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초기우수의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기능 상실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4개소를 정상 가동되도록 보완 조치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주변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끼친 용역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③ 아울러,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감액	재정상 조치금액	감액 4,722백만원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건설사업(ㄱㄱㄱ)조성공사 주요자재 과다계
상 등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내 용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 건설사업(ㄱㄱㄱ) 조성공사’를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12월 28일 ‘☆☆☆☆(주) 외 2개사’와 계약하고 2022년
2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공 사 현 황 “생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
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
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 경우 변경토
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취업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공사
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감사일 현재 ‘[표2] 내역서 확인내용’과 같이 현장에 적정한 공법선정, 유관기관 협의의견 반영, 현장발생재료 활용 등을 통한 공사비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2] 내역서 확인내용 “생략”

1. 옹벽식구조물(산석/보강토/압축토) 계획 관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환경평가과-952, 2017.4.11) 사항으로 ‘대규모 절·성토 발생구간에 대하여 과도한 지형변화 및 비탈면 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경북도청이전 ㄱㄱㄱ건설사업(ㄱㄱㄱ) 주요자재 선정 시(2017.6) 경관을 고려한다는 사유만으로 ‘[그림1] 신도시 2단계에 적용된 옹벽구조물 공법’과 같이 20개 구간에 대하여 옹벽구조물(산석 15구간, 보강토 1구간, 압축토 4구간)을 무분별하게 계획하였다.

[그림1] 신도시 2단계에 적용된 옹벽구조물 공법



※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요자재선정자료(2017.6)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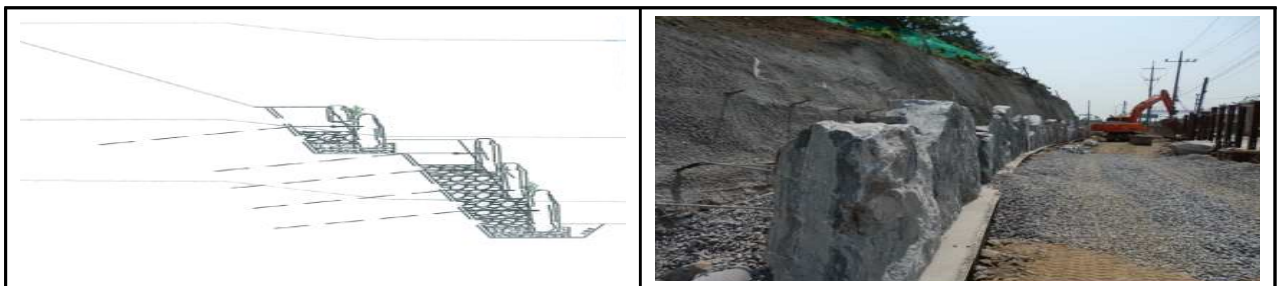
그러나, 경북개발공사에서 적용한 산석옹벽(15개 구간)은 ‘[그림2] 산석옹벽 어스앵커 도면 및 시공예시’와 같이 산석(큰돌) 뒤편으로 어스앵커¹⁰⁾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사면안정화를 위한 별도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절·성토 사면의 유지가 불가능한 지형에 설치하는 공법이다.

10) 구조물을 지반에 정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장력을 충분히 지지하도록 지중에 타설된 정착재

따라서 감사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용역사[(주)ㅈㅈㅈㅈㅈ 외 1)], 시공사[☆☆☆☆(주) 외 2], 설계용역사[(주)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 사무소 외 3], 경상북도 개발공사(청렴감사실, ΣΣΣ사업단) 합동으로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산석옹벽 1~5구간, 7~8구간, 10~11구간은 사면안정화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다른 구간에 대하여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요자재 선정자료 등을 참조하여 조사한 결과 ‘[그림3] 절·성토 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물 공법 예시’와 같이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공법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구간에 대하여도 경제성 등을 포함한 공법선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비 2,908백만원(대안 공법에 따른 절감액은 조정될 수 있음)정도를 절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림2] 산석옹벽 어스앵커 도면 및 시공 예시



[그림3] 절·성토 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조물 공법 예시



※ 경상북도개발공사 주요자재선정자료(2017.6) 등 재구성

2. 저류조 방수공법 관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저류조(2개소)에 대하여 ‘PP시트 라이닝’ 방수공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나, 본 공법은 일반적으로 인체에 안전한 PP(폴리프로필렌) 수지를 이용하여 먹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 등에 적용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이 건 저류조의 경우 강우 시 우수가 유입되는 시설로서 먹는 물탱크에 적용하는 PP(폴리프로필렌) 수지 계열의 방수보다는 에폭시 계열의 방수가 적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법선정의 부적정으로 인해 사업비 424백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다.

3.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관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6호)」 제4편 기타안전시설 ‘미끄럼방지 포장’에 따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마찰 증진이 요구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하도록 하며 비효과적인 무분별한 설치는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청신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2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결과 안동경찰서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미끄럼방지 포장이 과다하므로 이면도로 내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런데도, 협의의견에 따른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비 261백만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이 있다.

4. 관기초(오수/우수/상수) 자재 검토 관련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LH에서는 별도의 「설계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지침」 5. 우수·오수공사, 6. 상수 및 공동구 공사에 따르면 하수관 및 상수관 기초에 사용하는 재료는 석분, 화강암질 풍화토(마사

토), 모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재료에 대하여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관기초로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사업비 절감(570백만원)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관로 내 CCTV조사 및 수밀검사 분리발주 관련

CCTV조사 및 수밀검사 등을 분리발주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함에 따라 검사결과의 실효성이 없다는 국민제안을 수용하여 분리 발주하여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도록 환경부(환경부 하수67712-549, 2003.5.22.)로부터 통보 되었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CCTV조사 및 수밀검사 사업비 328백만원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도급내역에 포함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6. 블라드¹¹⁾ 구입방법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원가계산을 할 때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포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관급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블라드)에 대하여 사급자재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 인해 사업비 절감(196백만원) 방안을 검토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7. 오수받이 설치 관련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신도시 1단계에 설치한 오수받이의 경우 토지를 분양받은 지주가 건축 시, 단지 내 기 설치된 오수받이와는 별도로 오수 배출방향

11) 인도(人道)나 잔디밭 따위에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애물

에 따라 재설치 하는 경우가 많고, 미분양된 토지에 설치된 오수받이는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2단계 발주를 위한 관계기관(ㅇㅇ시·♀♀군) 협의 시 ㅇㅇ시로 부터 1단계 사업구간의 오수받이 설치가 실용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제외 요청되어 이를 제외하였다.

그러나,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군 구간에 대하여 ‘[그림4] 신도시 1단계 오수받이 설치 전경’과 같이 될 것을 추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천구역의 오수받이를 제외하지 않고 반영함으로서 사업비 절감(35백만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림4〕 신도시 1단계 오수받이 설치 전경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는

- ① 과다 계상된 공사비 4,722백만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감액 하시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처 ㄸㄸㄸㄸ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보수공사를 수의계약 체결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 € 처, ㄸㄸㄸㄸ 처

내 용

경북개발공사에서는 2014. 12. 15. (주)₩ ₩ ₩ 과 ㄱㄱㄱㄱ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 2017. 3. 31. 공사준공처리를 한 뒤 2018. 3. 5.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경산시의 오수관 처짐 재시공 통보에 따라 계약상대자 (주)₩ ₩ ₩ 에 2018. 3. 6., 같은 달 15. 하자보수 촉구요청을 하였으나 (주)₩ ₩ ₩ 은 오수관 처짐 현상이 시공상 과실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등 하자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하자보수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지방공기업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1조, 71조의 2, 71조의 3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¹²⁾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¹³⁾할 수 있

12)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제2절 7. 보증기관의 역무이행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역무이행 요청을 받으면 역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고,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 하자보증서 약관 제7조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는 이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하자보수불이행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 통지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이행(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요청을 한 뒤 보증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함께 하자책임 소재 등 손해조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18. 3. 오수관로처짐과 우수시설물에 대해 두 차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하자보수 이행통지를 하다가 (주)£££이 불이행 하자 위 규정과 다르게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이행 요청은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

13) 하자구분 관련 등 하자보수 이행 불가시 하자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자기 촉박한 사업준공과 공사 작업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사유로 같은 해 3. 20. 하자 보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주)£££과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위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계약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의 주요내용은 토공과 상·하수도, 포장복구 공사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수의계약 요청일(2018. 4. 4.) 현재 정당한 이행명령을 4회 불이행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없었다.

더구나 (주)£££이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제공자인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는 2018. 4. 17. 타 유관기관의 간섭이 없는 구간도 오수관리 침하구간이 있어 이는 오수관로 시공사의 불량시공이 의심된다고 회신하였다.

그 결과 (주)£££은 하자보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10. 하자보수공사를 계약금액 185,274천원에 계약체결하게 되었고, 하자보수보증서는 활용도 하지 못한채 뒤늦게 위 공사는 2018.11.16.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승소시에도 (주)£££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 € € € 처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토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도급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능력평가제도와 도급한도액 관련 설명자료¹⁴⁾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제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찰제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시공자는 평가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여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는

14) 기존 도급한도액제도는 정부가 공사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산정하여 공사업체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나, 99년 소방법 개정시 이를 폐지하고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 공사업체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시행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17.11.21. 경상북도 ○○○○ 건립사업 소방(기계,전기) 공사(추정가격 1,195,600천원) 입찰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등 제한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지역업체 49%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로 낙찰자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소방공사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시공실적, 경영상태, 가격평가 등 적격심사 평가기준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당초 입찰참가자격에 없던 시공능력평가액이 모자란다는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받는 등 입찰무효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공사에서는 2017. 11. 27. 공사입찰 개찰 이후 아래 [표1] 과 같이 당초 입찰공고 내용과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적격심사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단지 시공능력평가액이 모자란다는 사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받은 후 무효투찰 처리하였다.

[표1] ○○○○ 건립사업 소방공사 개찰현황 및 시공능력평가액 “생략”

이에 적격심사 1순위자 ♥♥♥♥ 주식회사 \$ \$ \$ 에 대해 적격심사점수를 확인한 결과 95.88점으로 정당한 낙찰자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 ♥♥♥♥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엔지니어링(주)¹⁵⁾ ∴ ∴ 과 ★★건설 주식회사 ○○○○은 부당하게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7. 12. 20. 계약금액 1,122,356천원에 계약체결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가 문란케 되었다.

15) √엔지니어링(주) 51%, ★★건설 주식회사 49%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1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천원
수감부서(처리부서)	€€€€처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 등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처
€€€€처 회계계약

관 련 자 ○○○ √√√(주민등록번호 b b b b b b - b *****)
⑤과 병합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위 사람 √√√은 2013. 6. 7.부터 현재까지 €€€€처 회계계약업무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다음과 같이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다.

1.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공기업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토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시공능력은 공사업자

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도급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공능력평가제도와 도급한도액 관련 설명자료¹⁶⁾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제는 발주자가 시공자의 시공능력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찰제한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시공자는 평가금액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여도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에서는 2017.11.21. 경상북도 ○○○○ 건립사업 소방(기계,전기) 공사(추정가격 1,195,600천원) 입찰공고를 하면서 별도의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등 제한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지역업체 49% 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로 낙찰자 결정을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소방공사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 시공실적, 경영상태, 가격평가 등 적격심사 평가기준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당초 입찰참가자격에 없던 시공능력평가액이 모자란다는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받는 등 입찰무효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 11. 27. 공사입찰 개찰 이후 아래 [표1] 과 같이 당초 입찰공고 내용과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위 규정과는 다르게 적격심사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단지 시공능력평가액이 모자란다는 사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 받은 후 무효투찰 처리하였다.

[표1] ○○○○ 건립사업 소방공사 개찰현황 및 시공능력평가액 “생략”

이에 적격심사 1순위자 ♥♥♥♥ 주식회사 ₩ ₩ ₩ 에 대해 적격심사점수를 확

16) 기존 도급한도액제도는 정부가 공사업체의 도급한도액을 산정하여 공사업체가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였으나, 99년 소방법 개정시 이를 폐지하고 공사업체의 공사실적, 자본금, 기술력 등 공사업체의 종합적인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 시행

인한 결과 95.88점으로 정당한 낙찰자인 것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정당한 계약대상자 한영전기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배제되었고, √/√엔지니어링(주)¹⁷⁾ ∴ ∴ 과 ★★건설 주식회사 ○○○○은 부당하게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7. 12. 20. 계약금액 1,122,356천원에 계약체결하게 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적정

경북개발공사에서는 2014. 12. 15. (주)₩₩₩과 ₩₩₩₩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 2017. 3. 31. 공사준공처리를 한 뒤 2018. 3. 5. 공공시설물 인수인계시 경산시의 오수관 처짐 재시공 통보에 따라 계약상대자 (주)₩₩₩에 2018. 3. 6., 같은 달 15. 하자보수 촉구요청을 하였으나 (주)₩₩₩은 오수관 처짐 현상이 시공상 과실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는 등 하자발생 책임을 부인하고 하자보수를 미이행하고 있었고,

「지방공기업법」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71조, 71조의 2, 71조의 3에 따르면 공사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¹⁸⁾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¹⁹⁾할 수 있고, 하자 검사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17) √/√엔지니어링(주) 51%, ★★건설 주식회사 49%

18)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제2절 7. 보증기관의 역무이행에 따르면 보증기관은 역무이행 요청을 받으면 역무이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19) 하자구분 관련 등 하자보수 이행 불가시 하자보증서 약관에 따라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

또한 위 공사 하자보증서 약관 제7조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 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는 이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하자보수불이행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자보수 이행 통지에 불이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이행(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요청을 한 뒤 보증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함께 하자책임 소재 등 손해조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8. 3. 오수관로처짐과 우수시설물에 대해 두 차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하자보수 이행통지를 하다가 (주)₩₩₩이 불이행하자 위 규정과 다르게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 이행 요청은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촉박한 사업준공과 공사 작업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사유로 같은 해 3. 20. 하자보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주)₩₩₩과 오히려 수의계약으로 위 오수관로 보수공사를 계약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의 주요내용은 토공과 상·하수도, 포장복구 공사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수의계약 요청일(2018. 4. 4.) 현재 정당한 이행명령을 4회 불이행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수의계약은 체결할 수 없었다.

더구나 (주)ㄴ ㄴ ㄴ이 주장하는 하자의 원인제공자인 유관기관 한국전력공사는 2018. 4. 17. 타 유관기관의 간섭이 없는 구간도 오수관리 침하구간이 있어 이는 오수관로 시공사의 불량시공이 의심된다고 회신하였다.

그 결과 (주)ㄴ ㄴ ㄴ은 하자보수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10. 하자보수공사를 계약금액 185,274천원에 계약체결하게 되었고, 하자보수보증서는 활용도 하지 못한채 뒤늦게 위 공사는 2018.11.16.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승소시에도 (주)ㄴ ㄴ ㄴ에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경상북도개발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을 “경징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사자	○급 ○○○		공개(○), 비공개()
신분상 조치인원	- 명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수감부서(처리부서)	ΣΣΣ사업단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이용 부적정
소 관 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관 계 부 서 ΣΣΣ사업단
내 용

「지방공기업법」,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립목적은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 이바지, 기업의 경제성·공공복리 증대를 위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취업규정」 제6조, 제17조, 제38조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9:00~18:00)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개발공사임·직원 행동강령규정」 제33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는 아래 ‘[표]차량 부적정 사용내역’과 같이 2016~2018년 기간 32회에 걸쳐 차량배차신청 및 이용자의 정당한 출장조치 없이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차량이 통과하는 하이패스 입·출구소의 이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차량이용자가 출장·조퇴·외출·휴가 등의 조치가 없었음에

도 근무시간 내에 차량이 운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다.

[표] 차량 부적정 사용내역 “생략”

조치할 사항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은**

- ① 앞으로는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상북도개발공사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